

# 15

## UN 결의안과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관점을 통해 바라본 사회적기업 육성법

☑ (추진배경) OECD 등 유수의 국제기구에서 최근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추진, 특히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가시화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법 제정을 강조**

☑ (추진목적) 본 리포트의 목적은 국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UN 결의안과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검토, 시사점 도출**

- 육성법을 국제사회 분위기에 맞춰 검토해보고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계기

### ☑ (주요내용)

- UN, ILO, OECD, EU 등 유수의 국제기구들이 각종 선언, 결의안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주류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
- 최근 **UN은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OECD는 관련 법률의 검토·제정·성과평가 단계별 필요 사항을 명시한 법체계 가이드라인 발표**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제정단계, 평가단계에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 통계로 가시화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프랑스 등과 같이 **육성법 역시 공식적인 체계를 통하여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 **개별 조직의 지원을 넘어 통합적 지원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CONTENTS

<b>1</b>	<b>추진개요</b>	3
<b>2</b>	<b>사회적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b>	4
<b>3</b>	<b>UN 결의안과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b>	5
	<b>가</b> UN 결의안	5
	<b>나</b>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6
<b>4</b>	<b>사회적기업 육성법 시사점</b>	7
	<b>가</b> 사회적기업 육성법 검토 및 제정단계 검토	8
	<b>나</b> 사회적기업 육성법 평가단계 검토	11
	<b>다</b> 향후 보완과제	12

# 1

## 추진개요

### UN 결의안과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검토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추진배경)** 지난 4월 국제연합(UN)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 190여 개 회원국과 국제 금융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안 마련
  - ‘21년 유럽연합(EU)의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연대경제 정의 채택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회적경제를 잇는 국제적 논의 활발
  - OECD, ILO, UN 등 유수의 국제기구에서 최근 2년 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즉, **전 세계적 동향과 환경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그 중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가시화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법 제정을 무엇보다 강조**, OECD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체계 가이드라인(이하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sup>1)</sup>도 최근 발표
- ☑ (추진목적)** 따라서 국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UN 결의안과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 시사점을 도출**
- ☑ (기대효과)** 육성법을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또한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법체계가 글로벌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 사회적경제 법체계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인식

1) OECD(2023).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 2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UN, ILO, OECD, EU 등 유수의 국제기구들이 각종 선언, 결의안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주류에 편입시키려는 노력

### ☑ (공통 키워드) UN, ILO, OECD, EU 등 유수의 국제기구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가치는 바로 **사회연대경제**

-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 불평등, 환경 등 문제가 심각해진 현시점, **사회연대경제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경제·사회적 해결책이자 대안으로 부상**
- 주요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주목한 이유는 일상부터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등 전 분야에서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되며,
- 사회연대경제는 역사상 팬데믹을 비롯한 경제 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제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사회변화 및 혁신의 도구로서 여러 차례 증명되었기 때문

### ☑ (정의·범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는 국가별·시대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생산 및 판매를 도모하고 국가와 시장 간의 경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

- 그 주체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회), 사단 및 재단, 사회적기업, 그 밖에 자조집단 등을 포괄

### ☑ (EU 등 국제사회) EU는 2021년 12월 '**EU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EU 전역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구체화<sup>2)</sup>

- OECD는 2022년 6월,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하며, OECD 가입 여부를 떠나 사회적경제 체계를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sup>3)</sup>
- ILO는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 중심의 새로운 경제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sup>4)</sup>
- UN은 2023년 4월, 제77차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해당 결의안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코로나19 등 보건 위기 및 기후 위기, 경제 산업 체제의 변화 등 급속한 인류 문명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 수단이자 기제임을 강조<sup>5)</sup>

2) European Commission(2021). Social Economy Action Plan.

3) OECD(202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4) ILO(2022).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5) UN(2023).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3

## UN 결의안과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UN결의안 경우, 포괄적 명시,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경우, 단계별 필요사항 명시

### 가. UN 결의안

- ☑ 2015년부터 UN은 지속가능발전, 새로운 도시, 사회적 발전 등의 결의안을 통하여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기여 인정
-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의 악영향, 지정학적 긴장과 분쟁 등으로 경제의 여러 취약점이 드러나고 기존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어, 변혁적이고 통합된 대응이 절실한 상황
- ☑ 사회연대경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두를 위한 생활수준 향상, 재교육(reskilling)과 직무향상교육(upskilling) 분야 등을 포함해 사회적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
- ☑ 따라서 빈곤 종식과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주요 내용

표 1. UN 결의안 주요 내용

주요주제	세부내용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및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연대경제 법체계 개발</li> <li>·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국가 통계로 가시화</li> <li>· 재정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제공, 교육과정 및 연구 지원</li> <li>· 국가 및 지역사회 규모의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li> <li>· 정책입안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주체 참여 독려</li> </ul>
UN 차원의 적극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수단 및 프레임 워크 개발</li> <li>· 회원국에게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도구로 인식시키며 프레임 워크 지원·시행·평가</li> <li>· UN 지속가능발전 협력체계에서 사회연대경제 장려</li> <li>· UN 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TF 활동 인정</li> </ul>
금융기관 지원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 국제, 지역금융기관 및 개발은행의 지원 독려</li> </ul>

## 나.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 OECD는 EU와 협업을 통해 20년 이상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2020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행동사업(OECD Global Action)'을 출범

- 국제공동행동사업은 법체계와 사회적 임팩트 측정을 강조하면서 기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및 개별법을 분석
- 2023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체계를 효과적으로 설계, 적용 및 평가할 수 있는 안내서 제공

☑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은 법률의 개발·시행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

표 2.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법률 검토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체계 필요성 및 개발 시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성숙도 검토</li> <li>- 명확한 정책 목표 수립</li> <li>- 협의 대상 이해관계자 파악</li> </ul> </li> <li>• 사회연대경제 범위와 공통적 특징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연대경제의 범위를 규정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li> <li>- 타 경제활동과 구분</li> </ul> </li> </ul>
법률 제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법적 접근방식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법인 법인격이나 법적 지위(인증 등)를 명시</li> <li>- 법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li> <li>- 정부 부처 간 의견조율 및 지방정부 참여</li> </ul> </li> <li>• 보완적 정책수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및 금융 접근성 향상과 적절한 금융상품 설계</li> <li>- 공공구매, 세금감면 및 특례 제공,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li> </ul> </li> </ul>
성과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평가 매커니즘 정립</li> <li>•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회적 목표 이행실태 점검 방안 마련</li> <li>• 사회적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평가체계 수립</li> </ul>

# 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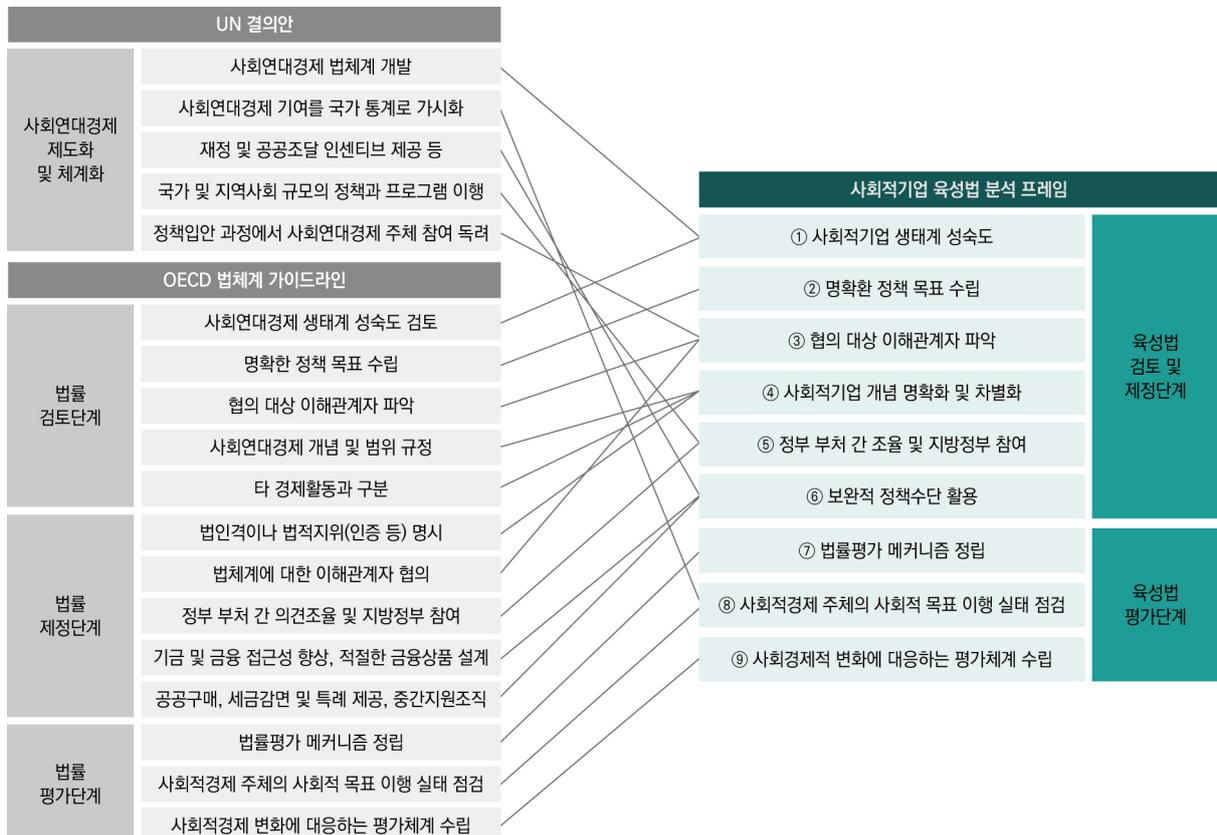
육성법은 검토 및 제정단계, 평가단계에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기여를 국가 통계로 가시화, 법률평가 메커니즘 정립 등을 보완할 필요

UN 결의안은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반면,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은 법률 제정 및 운영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다음과 같은 분석프레임으로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그림 1>과 같이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과 같이 법률 제정 및 운영 프로세스 중심으로 검토하되,
- 세부적인 검토항목은 UN 결의안 및 OECD 법체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중 중복적인 부분 등을 통합하여 총 9개로 구분

그림 1. 사회적기업 육성법 분석 프레임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검토 및 제정단계 검토

### ① 생태계 성숙도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성숙도는 법체계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기존 법률로 생태계의 성장지원이 어렵거나, 생태계가 성숙해 있는 경우에만 법체계를 개발할 것을 권고\*

\* 반면 기존 법률이 이미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수 있거나, 생태계 충분치 않은 경우, 법을 필수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성숙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지표로 관련 법률의 유무, 금융 접근성, 시장 접근성, 사업지원, 사회적 임팩트 측정 등 제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대상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법제화**

- 육성법 제정 당시 관련 법률은 개별 협동조합에 한하여 적용되는 개별법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자활기업이 유일하였으나, 지원대상을 수급자로 한정하였음에 따라 확장성은 다소 결여
- 아직 사회적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법체계가 미흡한 환경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으로 시작된 사회적기업의 담론은 시민사회 진영에서 시작되어 연구와 민간 영역으로 확대
- 일부 자활기업들은 업종별 대안기업연합회를 조직하며 사회적기업을 표방,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등은 취약계층에게 소액금융을 대출하는 사회연대금고를 탄생시켰고 자활기업 또는 비공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으로 성장
- 또한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과 별개로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기업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별도의 재단 설립 가속화
- 이와 같이, 당시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태동하는 양상이었으나,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공공조달 등의 시장접근성은 부족했던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육성법은 **당시 민간에서 싹트고 있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공공구매를 제도화하여 부족했던 시장 접근성을 보완하며 생태계 성장에 기여**

### ② 명확한 정책 목표 수립

☑ OECD 가이드라인은 **사회연대경제 법체계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을 권고**(복지국가 발달, 비공식부문의 공식화, 일자리 창출 등)

☑ 육성법은 당시 OECD 평균(21.7%)에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이 낮은(12.6%) 특성으로 인해<sup>6)</sup>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의 제공을 목표로 수립**

6) 김혜원(2009).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75호.

- ☑ 육성법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사회적기업이 역량 있고 신뢰할 만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 및 사업 지원 강화

### ③ 이해관계자 파악 및 협의

- ☑ OECD 가이드라인은 **사회연대경제 법체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 간 협의는 중요**하며, 특히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등을 대화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 \*\*

\*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제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는 캐나다 퀘벡, 프랑스 등이 있음

\*\* 캐나다 퀘벡은 사회적경제법(2014)에 따라 사회적경제 샹티에(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와 퀘벡협동조합 연합회(Conseil québécois de la coopération et de la mutualité, CQCM)를 공식적인 참여주체로 인정하고 사회경제문제 협의를 위한 대화창구를 마련하거나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2014)에 따라 격년주기로 사회연대경제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상호식 피드백을 보장하고 있음

- ☑ 육성법 제정 당시, 입법을 주도한 고용노동부와 시민사회 진영은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정책의 방향성에서 차이를 드러냄
- ☑ 비록 시민사회 진영이 제안한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법안'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의 공청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법안 구체화**

### ④ 개념의 명확화 및 차별화

-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등에 대한 개념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다른 경제주체와 구별**할 수 있는 법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
- ☑ 육성법은 제2조에서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다른 경제주체와 구별**하고 정책 및 지원과정에서 오는 혼선 방지
- ☑ 또한 제8조에 **인증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여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일반 시민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⑤ 정부 부처 간 조율 및 지방정부 참여

- ☑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법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는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 예를 들어, **핵심 유관부처가 입법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부지원사업의 파편화 및 구획화를 방지**하도록 하거나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고유한 필요에 걸맞게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 육성법의 제정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면서 당시 자활사업을 담당하던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진행하지 못함)
- ☑ 하지만 이후 육성법을 근거로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참여하도록 연계하여 부처 간 협력을 촉진**
- ☑ 또한,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했고, 지자체가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력 활성화에 기여**

### ㉔ 보완적 정책수단 활용

- ☑ UN 결의안 및 OECD 가이드라인은 **법체계만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적 정책수단 언급**
  -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금 및 금융에 대한 접근성 향상, 세금 감면과 공정거래법 특례 제공, 민간 및 공공조달 확대, 정부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제도화 촉진 등 제시
- ☑ 육성법은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지원, 우선구매 등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연계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명시하여 민간자원의 참여를 독려**
  - 그리고 시·도별 지원계획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동시에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 서비스 및 자금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 ☑ 육성법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치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전반을 일관성 있게 실현 추진**
  - 또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7) 김혜원(2009).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75호.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평가단계 검토

### ① 법률평가 매커니즘 정립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법령은 이미 수많은 국가/지역에서 시행 중이지만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매커니즘은 극히 일부 국가(예: 캐나다 퀘벡, 프랑스, 룩셈부르크, 멕시코)에만 마련되어 있음을 언급

\* 캐나다 퀘벡주는 사회적경제법(2013)에 따라 '책임성 보장 매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을 도입하여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공식화하고 주 정부 당국과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의무화

\*\*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2014)은 2년마다, 룩셈부르크의 사회적성과기업에 관한 법률(2016)은 주무 부처가 시행일로부터 3년 이해 법률을 평가하도록 규정

- 정기적인 평가체계의 부재는 관련 법률을 적시에 개정,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이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육성법 내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평가 매커니즘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률이 창출한 성과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 ②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회적 목표 이행실태 점검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회적 목표 이행실태를 파악하는 것

☑ OECD 가이드라인은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특혜(예: 정부보조금, 공공조달 등)를 누리고 있다면 그러한 혜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

☑ 육성법 내 정기적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평가하고 있으며,

-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와 함께 관련 성과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
- 또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SVI, Social Value Index)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줌으로써 재정지원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자 노력

☑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전반에 기여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대표적인 지표가 구축되어 있거나 이를 국가통계로 생산하고 있진 않은 상황

### ㉓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평가 체계화

- ☑ OECD 가이드라인은 **정책 평가**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보다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고 환경친화적 경제와 사회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기술
- ☑ 육성법 내 **5년 단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도화하여 기존 정책의 한계 및 보완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
  - 또한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이에 기초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명시함

## 다. 향후 보완과제

### ㉑ 사회적기업의 기여를 국가 통계로 가시화

- ☑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는 기업의 기초 현황, 취약계층 고용 등 기업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작성
- ☑ 이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국가 통계 마련 필요
  - 불가리아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기본법(2018)을 통해 관계부처 장관이 통계청의 사회연대경제 지표개발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

### ㉒ 법률 평가 메커니즘 정립

- ☑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정부당국과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사회연대경제 법령에 관한 평가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육성법 역시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
  - 프랑스의 경우, 법률과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사회연대경제 대표자 및 네트워크가 참석하는 회의를 2년 주기로 개최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기본법(2014)에 근거 마련
  - 멕시코의 경우, 사회연대경제법(2012)에 따라 사회정책평가위원회(행정부 산하기관)를 통하여 법령평가 시행

### ③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

- ☑ OECD 가이드라인은 개별법과 기본법 제정의 특징을 설명하며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구성된 생태계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포괄적이고 실체적 접근을 강조하며 개별법에서 시작하여 기본법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언급(캐나다, 프랑스, 포르투갈 및 스페인 등)
- ☑ 반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발전하였으나, **주체 간 통합이 미흡한 국가의 경우 보편적 법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개별법에 방점을 둔다**고 설명(브라질, 인도 등)
-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경과하였고 그간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국내 사회적경제 주체 생태계는 다양하며 주체 간 교류도 확대**
- ☑ 이미 UN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을 결의안을 통해 천명한 만큼 우리나라도 **개별 조직의 지원을 넘어 통합적 지원을 추구하는 관련 법 제정 필요**

#### 참고문헌

1. 김혜원(2009).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75호.
2. European Commission(2021). Social Economy Action Plan.
3. ILO(2022).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4. OECD(202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5. OECD(2023).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6. UN(2023).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정은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조사연구팀 과장  
eunjung@ikosea.or.kr 031-697-7772